

저소득자 지원 급부금 및 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의 안내

물가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저소득자 지원 급부금」과 「II.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급부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한
<p>I.저소득자 지원 급부금</p> <p>2024년 6월 3일 시점에 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다음의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세대</p> <p>① 2024년(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의 주민세가 비과세인 세대</p> <p>② 2024년(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의 주민세가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주민세가 비과세 세대 또는 균등할만 과세된 세대에 대한 급부금 대상이었던 세대 ·세대 전원이 2024년 주민세가 부과되고 있는 다른 친족 등의 부양을 받고 있는 세대 ·조세 조약에 따른 면제를 적용받은 결과, 주민세가 비과세 또는 균등할만 	<p>대상이 되는 세대나 개인에게 공지를 송부합니다. 세대 및 개인 사정에 따라 공지 사항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번거로우시겠지만, 콜센터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p> <p>또한 각 구청에 신청 서포트 창구가 있으므로, 신청 할 때에 이용해 주십시오.</p>	<p>2024년</p> <p>9월 30일(월)</p> <p>소인 유효</p>
<p>II.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p> <p>2024년 1월 1일 시점에 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정액 감세 가능액이 2024년분 추계 소득 세액 또는 2024년 주민세 소득 할액을 넘는 분</p>		

■ 지급액

I.저소득자 지원급부금...1세대당 10만엔

II. II.정액감세 보충급부금...①+②의 합산액(만엔 단위는 절상하여 산출)

- (1) 소득세의 정액 감세 가능액-2024년분 추계 소득 세액
- (2) 주민세의 정액 감세 가능액-2024년도 주민세(소득할)

※소득세의 정액 감세 가능액=3만엔×(납세자 본인+국내 거주 부양 친족 등의 수)

주민세의 정액 감세 가능액=1만엔×(납세자 본인+국내 거주 부양 친족 등의 수)

문의

【저소득자 지원 급부금 및 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 콜센터】 ※영어, 중국어, 조선어(한국어), 베트남어 가능

접수 시간 9:00~17:00 (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

전화 0120-178-222 FAX 0120-666-513

【저소득자 지원 급부금 및 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 신청 서포트 창구(각 구청 내)】

개설 기간 6월28일(금)~9월30일 (월)

접수 시간 9:00~17:0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